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패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9-164
----------	--------

제안연월일: 2019. 11. 18.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패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위원 수는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해 전문성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도록 도입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의 미비, 사업수행에 대한 감독과 사후 관리의 미흡 등의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 이러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포구의회는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의 제고, 사무처리에 따른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 민간위탁사업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민간위탁 운영의 전 과정을 점검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5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현대사회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한 행정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기관 등에 행정사무를 위탁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현재 마포구는 20개 부서 행정사무 업무를 152개의 사업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재위탁·재계약 업체는 105개이며, 최근 5년간 신규 위탁 체결한 업체는 47개로,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하지만 민간위탁이 행정 전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등의 사무처리 기준 및 절차의 미비, 사업수행에 대한 감독·사후 관리의 미흡 등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행정사무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이에 마포구는 공적 부분의 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자 지난 10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바 있다.

- 마포구의회는 정부의 권고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전면개정의 취지에 따라 그동안 마포구 행정사무를 수행해온 민간위탁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 부패유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민간위탁사업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민간위탁 운영의 전 과정을 점검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구성을 결의한다.

[관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시행 2019. 8. 8.]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244호, 2019. 8. 8., 일부개정]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